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- 11호

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 영동군의회의장

- 1. 조 례 명 :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2. 개정이유
 - O 상위법 전면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를 위함
- 3. 주요내용
 - 제명변경 : 「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」⇒「영동군 지능정보화 조례」
 - O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 조항 신설 (안 제4조)
 -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 (안 제5조)
 - O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
 - O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

- 전 화: 043)740-3088, FAX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	. 대상 :	「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・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영동군 지능정보화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과 관련하여 영동군의 지능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정보취약계층"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·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, 농어민, 장애인, 고령자 등을 말한다.
 - 2. "주관부서"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) 영동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지능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

- 2.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
- 3.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
- 4.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
- 5.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
- 제4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영동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
 - 2.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
 - 3.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
 - 4.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·활용
 - 5.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
 - 6.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
 - 7.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
 - 8. 정보격차해소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・해소
 - 9. 재원의 조달 및 운용
 - 10.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 제5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 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"지능 정보화책임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-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6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 각 분 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・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의 기관·단체 및 외국의 기관·단체·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8조(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 통신망을 구축·운영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 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)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능정보화 교육)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이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 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·장비·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정보격차의 해소)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·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마을회관, 경로당, 복지회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

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3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「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정보보호)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
 ・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
 - 2.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, 활용,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
 - 3.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
 - 4.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영동군 지역정 보화 조례」제6조에 따른 영동군지역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해산 한 것으로 본다.